

의 정 정 보

2010 - 2호 2. 10.

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2
3.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26
4.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38
<참고>	
1. 행복한 책임기	56
2. 2009년도 광역시·도 제정 조례 현황	59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정당 및 후보자의 트위터 계정 운영	——	2
2. 국민배심원단 형식의 당내 후보자선출의 성격 등	——	3
3.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해당선거’	——	5
4.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정당의 정강·정책 광고	——	6
5. 후보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생방송	——	6
6. 아파트 LCD모니터를 이용한 의정보고회 고지	——	8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	——	8
8. LED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9
9. 당내경선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의 공직 선거후보자 결정	——	11

① 정당 및 후보자의 트위터 계정 운영

《질 의》

정당 및 후보자의 트위터 계정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트위터(<http://www.twitter.com>)에 정당이 계정을 개설 운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인터넷 홈페이지 트위터(<http://www.twitter.com>)에 개설한 후보자의 계정이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의견》

트위터의 각 계정은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계정과 독립된 주소와 구조를 지니고 있고, 해당 계정의 소유자가 그 콘텐츠를 임의로 올리거나 삭제할 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트위터는 사진 및 동영상의 첨부 없이 140자 이내의 문자로만 콘텐츠를 작성해 올릴 수 있고,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 간에 팔로워(Follower) 기능을 이용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블로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팔로워 기능은 모바일이나 컴퓨터 등으로 계정 소유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메시지를 팔로워(Follower)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이메일 등의 전송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데이터를 볼지 여부를 능동적으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통상의 전송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의 계정에 글을 올리는 계정 소유자 역시 누가 그 글을 볼지 여부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선거법상의 ‘전송’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 12. 11. (가칭)국민참여당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트위터에 계정을 개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그 게시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트위터(<http://www.twitter.com>) 계정은 인터넷홈페이지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의 기능이 융합된 구조이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내용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때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2010. 1.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② 국민배심원단 형식의 당내 후보자선출의 성격 등

《질 의》

당내경선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1. 현재 사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제도를 일부 수용하여 200여명의 선거인단(배심원단)을 구성하여 후보자간 토론회 등 후보검증절

차를 거쳐 선거인단(배심원단) 투표로 후보를 결정할 경우 경선을 한 것으로 인정(경선불복 방지)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2006년 민주당 광주광역시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결정방식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었음.

※<참고> 선거인단(배심원단)은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배심원(일반유권자)’ 50%, 당이 지역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지역배심원(일반유권자)’ 50%로 구성할 예정임.

2. 선거인단(배심원단)으로 참여한 지역민에게 비용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절한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3. 타 정당간의 후보단일화 방식으로 활용가능한지 회신바랍니다. (2009. 12. 14.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 위원장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적정규모의 인원으로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투표를 통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간 후보단일화는 가능할 것이나, 일반 유권자를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후보자토론회 등을 통해 해당 정당 또는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될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임. (2010. 1.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③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해당선거’

《질 의》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처는 2009년 1월 구정선물로 후원회원 등 105명에게 열치 한 박스(법원평가 28,000원, 실제로는 10,000원에 구매)씩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9.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 중에 있습니다. 만일 위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의하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당해 선거’라 함은 어느 선거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2012년에 있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것인가요?
2. 제가 2010년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당해 선거’ 규정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3. 제가 2010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낙선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 규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2009. 12. 2. 국회의원 김충환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기부행위를 한 시점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해당 선거 및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되는 경우 그 당선이 무효로 될 것임. 다만, 귀문의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선거 및 선거구를 특정할 수 없음. (2010. 1.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정당의 정강·정책 광고

《질 의》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정당의 정강·정책 광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오는 6. 2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중앙당이 시내버스(버스 외부)나 지하철 광고(객차 내부)를 통해 정당의 이미지 및 정강·정책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가능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 1. 20.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시내버스 및 지하철 광고를 이용하여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강·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0. 1.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5 후보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생방송

《질 의》

2010. 6.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인터넷 생방송

입후보예정자가 현 시점에서 기자, 교수, 학생, 지인 등과 1:1 혹은 1:2:5 인 이내 사람들과 후보자의 살아가는 이야기, 정책 등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생방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생방송이 불가능하다면 녹화하여 게시하는 것은 가능한지?

또한, 후보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의 경우 인터넷 생방송이 가능하게 하려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무료로 인터넷생방송이 가능한 아프리카(<http://www.afreeca.com>)나 유사한 서비스에 계정을 개설하고 자신의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이 가능한지? 외국서비스 사이트인 트위터와 연결된 트윗캠(<http://twitcam.com>), 유에스스트림(<http://www.usstream.tv>)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2. 블로거 기자회견

기업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기자간담회와 더불어 블로거 기자회견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자간담회(회견)와 별개로 블로거 회견을 개최하여 자신의 정견·정책 등을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지? (2009. 12. 16. 황의홍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대화내용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견·정책, 공약사항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견·정책 기타 사항을 알리기 위한 블로거 회견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0. 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⑥ 아파트 LCD모니터를 이용한 의정보고회 고지

《질 의》

2010 의정보고회 개최에 있어 법에서 정하는 의정보고회 고지벽보에 포함 가능한 사항(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함)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LCD모니터를 이용해서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규해석을 의뢰합니다. (2010. 1. 6. 국회의원 원유철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지벽보의 첨부시기·수량·규격 범위에서 고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0. 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후보예정자가 아닌경우 「공직선거법」 적용

《질 의》

현 의왕시장은 2009년 11월 전 직원이 모이는 월례회의에서 자신은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그 사실이 지방신문에 보도된바 있으며, 그 이후 출입기자들과의 개별 면담에서도 입후보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준비 있고, 각종 사회단체 모임에서도 입후보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으며, 직접적으로 입후보 여부를 묻는 지인들의 질문에도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왕시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자가 되어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제한·금지규정(예 : 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257조 등)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지요? (2009. 12. 11. 안치환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특정행위가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기부행위자, 기부의 동기나 방법 등 행위 양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지의 여부는 언론보도, 당사자의 발언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2010. 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답)

⑧ LED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질 의》

2010년 6월 지방선거 및 각종 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용품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1. 각종 선거에서 선거 운동원들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선거 용품(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맞는 크기로 제작) 중에서, 옷이나 어깨띠, 장갑, 조끼, 피켓 등과 같은 곳에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 및 기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할 때, 야간에도 유권자들에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LED로 제작하여 선거 용품에 부착하여 후보자를 알리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LED를 이용하여 발광된 빛을 하단에 놓고 섬유위로 투과되어 문자를 표현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표현하거나, LED의 회로기판을 제작하고 해당 기판에 여러 개의 LED를 배열하여 이름과 기호를 나타내거나, 회로기판에 LED를 배열 한 후 이름과 선거 구호 및 기호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LED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해당 부분만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 방법(이 경우 표현되는 문자는 변화를 주지 않음)

나. LED에 연결된 제어장치에 의하여 해당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제어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선거 구호, 기호등 문자를 슬라이드 쇼와 같이 연속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법

2. 상기 원리와 동일한 LED 간판의 선거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

[참고용 이미지] : 첨부파일 참조 (2010. 1. 20. (주)맥소정보기술 부사장 하종운 질의)

어깨띠	간 판
 뒷면에 2~3cm 두께의 회로기판 부착	

《답 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될 경우 같은 법 제100조에 위반될 것임. (2010. 2.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⑨ 당내경선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의 공직 선거후보자 결정

《질 의》

우리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장의2에 따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6장의2에 따른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제1항에서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구지방의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장의2에 따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는 조항을 당규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2010. 1. 27. 민주당 민원법률위원회위원장 임내현 질의)

《답 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 귀문과 같이 연장자를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당내경선의 후보자 선출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10. 2.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최근 주요 제 · 개정 법령

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	1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	15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9
4.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20
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21
6.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22
7.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	24
8.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24

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75호, 2010.1.25. 공포】

1. 개정이유

2004년 법 개정(법률 제7191호, 2004. 3. 12. 공포·시행) 이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및 소액다수 기부문화의 조성 노력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시·도지사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정착이 어려운 한계가 있고,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정치적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므로,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및 당비 영수증발행, 회계보고기한 등 집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후원회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1항, 제17조제5항).
- 나.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까지 확대 함(법 제6조제6호).
- 다.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

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 시까지 해당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법 제12조·제17조).

라.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인쇄물·시설물 등에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함(법 제15조제1항).

마.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입금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도록 함(법 제17조제13항 신설).

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인추천보조금을 신설함(법 제26조의2 신설).

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함(법 제27조의2 신설).

아.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소 해산 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법 제30조제1항).

자. 신용카드 이용 등과 같이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한 지출행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어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제1항).

차.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

조제5항 단서 신설).

카. 단체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함(법 제50조 단서 신설).

타.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51조제4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74호, 2010.1.25. 공포】

1. 개정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죄

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법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법 제18조제3항).

나. 시·도 지역구시·도위원의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1항).

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법 제53조제1항).

라.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제1항 단서).

마.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법 제60조의2제2항).

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의3제1항·제2항).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법 제62조제4항 신설, 법 제122조의2제3항 및 제135조제1항).

아. 후보자가 공고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법 제65조제8항,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신설).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1항).

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2조제2항 신설, 법 제103조제3항).

카. 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8조제3항·제6항 신설).

타.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법 제147조제4항).

파.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149조의2 신설).

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정하도록 함(법 제150조제7항 신설).

거.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함(법 제166조의2 및 제256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함(법 제216조제2항).

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도록 함(법 제261조제6항).

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법 제266조제2항, 법 제266조제3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2항, 제108조제3항제4호, 제137조제1항 및 제16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부분과 부칙 제11조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③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1호, 2010.1.25.공포】

1.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개정(2009. 12. 30. 국회 본회의 의결)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및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직무대행은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하도록 함(제7조제2항).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토론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1) 공영방송사추천위원으로서 해당 공영방송사의 요구가 있는 때

(2)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해촉 또는 파면된 때

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정당추천위원도 지명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3항).

라.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의 각 팀별 사무분장은 중앙토론위원회가 그 운영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4항).

마. 대담·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는 참석여부에 따라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3조제2항).

바.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 방송시설이용료 지급기준을 대담·토론회 중계방송 지급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로 조정하되, 기존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6호, 2010.1.25.공포】

1. 개정이유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후원회 허용,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도의 도입, 금융기관에 대한 후원인 인적사항 요청 근거 신설 등 정치자금법 개정(2009. 12. 30. 국회 본회의의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처리와 관련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치구·시·군의 장후보자후원회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함(제2조제3호).
- 나. 자치구·시·군의 장후보자후원회의 명칭은 ○○구청장·시장·군수후보자○○○후원회로 함(제7조제6호의2 신설).
- 다.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등을 위한 안내장 및 광고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안내장 게재사항을 삭제하고, 자치구·시·군의 장후보자후원회의 후원금모금 등을 위한 안내장 발송 통수는 3천통 이내로 함(제19조제2항).
- 라.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서식과 금융기관의 회보서식을 마련함(제21조제10항 및 별지 제21호의2·제21호의3서식 신설).

- 마.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이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를 통보하는 서식을 마련함(제30조의2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 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나 당대표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가 그 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계책임자를 겸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완함(제33조).
- 사.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영수증 그 밖에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도록 함(제35조제3항).
- 아. 회계책임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와 그 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 및 회계사무보조자 등이 지출하는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9조제1항)
- 자. 1회 1만원 이하의 당비 및 후원금에 대하여 연도말일 현재로 1매 또는 일괄하여 영수증을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별표 2).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2호, 2010.1.25.공포】

1. 개정이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의 재심청구기간을 확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인용규정의 개정사항을 반

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각 팀별 사무분장은 심의위원회가 그 운영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4항).
- 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청구기간을 확대함(제20조제2항).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3호, 2010.1.25.공포】

1. 개정이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당내경선 위탁사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부분의 정당이 경선후보자등록기간과 경선기간개시일 사이에 간격을 두어 경선일정을 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헌·당규에서 경선기간개시일을 정하고 있거나 정당이 이를 따로 정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경선기간개시일부터 경선일까지를 경선기간으로 하도록 함(제2조제4호).

- 나. 경선을 정당과 협의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선사무관리에 관하여 법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본선거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3조).
- 다.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경선사무의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도 고려하도록 함(제5조제2항).
- 라. 대부분의 정당이 경선후보자등록기간과 경선기간개시일 사이에 간격을 두어 경선일정을 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경선선거인명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선선거인 명부 제출시기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에서 “경선기간개시일 전일까지”로 조정함(제7조제1항).
- 마. 경선사무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단위 또는 시·도단위로 경선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는 관할구역 안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 바. 경선기간의 단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개표소 공고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4항, 제16조제2항).
- 사. 투표안내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투표안내문 작성 및 발송과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⑦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4호, 2010.1.25.공포】

1.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개정(2009. 12. 30. 국회 본회의 의결)으로 개표가 끝난 후 투표지 봉인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투표수 및 후보자별 득표수는 통합선거인명부확인시스템 운영단위로 계산할 수있도록 함(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 나. 투표지봉인 절차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규정과 같이 개표를 마친 후 투표기록 전자저장매체와 투표기록지를 관할위원회위원장이 봉인하도록 함(제25조제1항).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⑧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5호, 2010.1.25.공포】

1. 개정이유

등록대상 정당의 간부와 변경등록대상 정당의 간부가 일치하도록 정당법이 개정(2009. 12. 30.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등록대상 정당의 간부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중앙당의 간부 중에서 등록대상 및 선임방법·임기 등에 대하여 당헌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람을 중앙당의 대의기관의 장, 사무기구의 장,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로 함(제6조제1항).
- 나. 시·도당의 간부 중에서 등록대상을 시·도당의 대의기관의 장, 사무기구의 장으로 함(제6조제2항)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 | |
|----------------------------|------|----|
| 1.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 27 |
| 2.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 | 31 |
| 3.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 ———— | 34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11
----------	-----

발의연월일 : 2009. 10. .

발 의 자 : 손상용, 하선규, 전윤애
전일수, 김수용, 전봉민
김성우, 허동찬, 김선길
강성태, 신숙희, 백종현

1. 제안이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우리 부산은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이 풍부하고 아울러 의료관광에 적합한 사계절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의료관광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료관광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선진 의료관광도시보다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부산의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의료관광객 유치지원 및 의료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의료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유치안내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의료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제행사 추진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 다. 기 타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부산광역시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부산광역시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선도의료기관 지원) ① 시장은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3.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
4. 의료관광 유치안내센터 설치·운영
5.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2. 의료관광 관련 국제행사 추진 업무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http://www.council.busan.kr>]

②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95
----------	-----

발의연월일 : 2009년 11 월 일

발 의 자 : 임무창 의원 등 44인

1. 제정이유

- 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
- 나.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경기도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내식당·매점·부속의원·체력단련실·콘도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후생복지제도 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경기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도지사는 경기도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의원,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5. 도청 어린이집 지원

제8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9420호, 2009.2.6, 일부개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자료출처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3]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410
----------	------------

발의년월일 : 2009. 10.

발 의 자 : 유창희의원외
20 인

1. 제정이유

「주택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무주택 저소득 계층 가구에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자(안 제3조)

-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함

나. 지원대상 주택(안 제4조)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하며, 연간 지원대상 주택

의 세대 규모는 당해 년도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계획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지원범위(안 제5조)

- 지원범위는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5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2010년도 예산에 반영)

다.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 입법예고 생략 (의원발의)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최저주거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2.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
4.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인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무주택 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주택)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건립·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한다.

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도내 지역별 당해 년도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금액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임대보증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로 하며, 도지사 와 시장·군수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자료출처 : 전라북도의회, <http://www.assem.jeonbuk.kr>]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남성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	39
2. 개인정보를 다루는 컴퓨터시스템도 영향평가 받는다	————	39
3.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완료	————	41
4. 전국을 잇는 3,120km 자전거도로 페달을 밟는다!	————	43
5. 「거주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된다	————	45
6. "장애인복지민원"도 이제는 집에서 한꺼번에 처리	————	46
7. 원 클릭으로 나만의 주민서비스 OK!	————	48
8. 희망근로 「내고장 역사찾기」 2월부터 전국시행	————	50
9. 120만 재외국민 국내 웹사이트 이용 가능해진다	————	51
10. 행안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상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 천명	————	5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① 남성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 행안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남성화장실에도 여성화장실과 같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 하고, 단수 등의 비상사태 대비 및 물절약을 위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여성화장실 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 공중화장실 등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중수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화장실 환경개선과 녹색화장실 문화를 조기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개인정보를 다루는 컴퓨터시스템도 영향평가 받는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보급 -

□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도 환경영향평거나 교통영향평가처럼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안전한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는다.

- 사회전반에 걸쳐 전산처리가 일반화되면서 각급 기관에서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화되고 있어,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실제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컴퓨터시스템의 특성상 한번 구축된 시스템은 변경이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시스템 구축 전에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월 5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마련하여, 일선 공공기관이 안내서에 따라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는 각급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일반적인 개념에서부터, 언제, 어떻게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지 등 영향평가 업무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 영향평가 대상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신규시스템 구축사업, 기존시스템 변경사업,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사업 등이다.
- 영향평가 절차는 먼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선정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발생가능한 침해요인과 위험요소별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 각급 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금년 중에 각급기관이 안내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손쉽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③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완료 - 인감증명 요구사무 209종 중 120종(60%) 폐지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1단계 과제인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 폐지목표(120건)를 달성했다고 하였다.

- 인감사무감축은 작년 7.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정부 정책으로 채택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중 1단계 과제로,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125종(60%)을 폐지키로 한데 대한 후속조치이다.

※ 5종은 법률개정사항으로 '10년 상반기 완료예정

□ 인감요구사무 폐지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이번에 폐지된 120종 인감요구사무 중,
 - 시행령에 근거한 사무가 18건,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무가 56건, 예규·훈령 등에 근거한 사무가 46건으로 나타났다.
- 부처별로 살펴보면, 인감사무폐지를 추진한 22개 중앙부처 중
 - 지식경제부 소관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15건), 법원행정처(14건), 행정안전부(10건) 순이었다.
- 폐지된 사무 유형별로 보면,
 - 저작권·광업권 등 각종 권리 양도(30건), 보상금·환급금·연금 등 대리수령(30건), 임원취임·입찰 등 자격등록(24건), 기타 대리인 자격증명(36건)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 인감요구가 폐지된 사무에 대해서는,

-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각종 권리 양도를 위해 인·

허가/등록 원부에 양도·양수 표시를 하거나 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이로써 부동산, 채권양도, 공증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주요 폐지사무 유형별 대체방안 》

유 형	폐지 사무 (예시)	인감증명 대체방안
권리 양도	저작권 및 광업권 이전, 질권설정, 등록 등	신분증 사본, 권리증에 대한 등록관청의 확인(인증) 등
보상금 등 대리수령	보상금, 환급금, 연금 등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인·허가	영업 지위승계, 면허, 인·허가권 양도 등	인·허가증/등록증에 양도양수 표기
임원 임명	(사회복지재단 등의) 임원 취임 등	신분증 사본, 임원임명승낙(동의)서
신고사항	대리인 자격(소송, 파산, 보증인 등)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 이번 인감사무 감축을 통해,

- 연간 약 천만명의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간 4,800만통 발급되던 인감증명서가 약 천만통 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 및 시간비용 등을 고려하면 연간 약 46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일선 공무원의 업무경감으로 주민복지에 전념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앞으로,

-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규정된 인감요구사무(5종)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폐지완료하고,

※ 인감요구사무 중 법률개정사항 : 5건(법무부 2건, 국토부 3건)

- 폐지 완료된 사무에 대해 집행부서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후관리 및 지도하고, 민원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또한, G4C등 주요 민원신청 포털에 인감폐지 사무를 등재하여 인감 증명 없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을 국민이 알게 할 계획이다.

4] 전국을 잇는 3,120km 자전거도로 페달을 밟는다!

- 2010년 50개지구 178km 조성을 위해 1,000여억원 투입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시민의 출·퇴근,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길로 전국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국가자전거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 「국가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인 동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추진되며, 총연장 3,120km에 달하는 사업이다.
 - 사업원년인 금년에는 전국 50개지구 178km를 조성하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여 502억원의 국비를 포함, 1,00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 해당 자치단체에서 도로환경 등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 설계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 국가자전거도로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가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로서, 저탄소녹색성장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녹색교통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산업의 발달 이후 70, 8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국가차원의 집중투자를 통해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전거문화가 뿌리내리게 되었고,

- 우리나라도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민 누구나 자전거로 전국 곳곳을 갈 수 있는 선진형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게 된다.

□ 금년도 사업의 주요특징을 보면,

○ 첫째,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이용될 수 있는 도심내 생활형도로를 우선적으로 조성한다는 점이다.

- 서울시의 청계천 구간 및 송파구 구간은 직장과 상권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관광·쇼핑과 관련된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활발한 자전거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 인천시의 경우 동구 송현동에서 서구 원창동까지의 노선은 청라 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되어 있고,

- 대전시의 노선은 대전시청인 관공서와 업무용빌딩, 상업시설이 밀집된 중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출·퇴근, 쇼핑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노선이다.

○ 둘째,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하였다.

- 대구시의 사업노선은 '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와 연계하여 경기장주변도로를 우선 조성하며, 광양시와 창원시 지역은 '공단지역 근로자 출·퇴근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도 국가자전거도로 노선에 포함하고 있어 자전거도로 구축이 완료되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금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전국을 잇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골격으로 하여 지자체별로 지선형 및 도시내 자전거도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자전거망과 지자체망이 종합화하게 된다.

- 지자체에서는 국가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테마형 관광노선, 주민 실생활형 도심노선 구축등을 담당하여 전국적인 자전거망을 형성하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노력하는 것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정책 총괄부처로서 국가자전거도로사업 외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인프라구축,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에 대한 '자전거 정책의 마스트플랜'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 자전거는 순수한 사람의 힘으로 이동하므로 에너지가 절약되고 5km 내 단거리에서는 승용차에 비해 빠르며,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에 유익한 교통수단이다.

-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러한 잇점을 갖는 자전거가 보다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이용자의 안전에 최우선의 중요성을 부여하여 추진하고, 조기에 자전거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국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⑤ 「거주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된다

-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기준 변경 -

□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자도 포함되어 조만간 5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매월 말에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1월 말부터 「거주불명 등록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 거주불명 등록자(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소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 불명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하여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기본권 보장과 함께 행정서비스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 통계에 포함하여 공표함으로써 각종 국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2009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49,773,145명(남자 24,929,939명(50.1%), 여자 24,843,206명(49.9%))으로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 약 28만 9천 여명(최근10년간 무단전출 말소자)을 통계에 포함하면 주민등록 인구가 총 50,062,320명이 된다.
- 무단전출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정상적인 주민등록자로 포함될 수 있지만, 별도 신청에 의해 한시적으로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되거나 별도 신청이 없으면 법 시행 1년 후('10.10.3) 직권으로 관할 읍면동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되어 올해 중으로 주민등록 인구 5천만 명이 돌파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장애인복지민원"도 이제는 집에서 한꺼번에 처리 - 장애인, 이사 등 5종의 생활민원 전국서비스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중앙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연간 570만여 명이 일괄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1월 28일부터 서비스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는 서민들이 일상생활

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민원서비스이다.

- 민원인은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 접속해 장애인복지, 이사, 보훈, 사망·개명신고 후 일괄민원 5종에 대해서 통합민원신청서로 한꺼번에 일괄 신청하고, 각각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의 본격 개통에 따라 여러기관 방문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 지난 12월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이사민원 일괄서비스의 경우 전입신고가 9만 9천건이 온라인으로 신청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종이문서 감축 및 교통수요 감소로 사회적비용 절감과 탄소배출량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5종서비스 사회적비용 연간 970억원 절감, 탄소배출량 연간 4,130톤 감소

- 이번에 새로 개통한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서비스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통해서 민원 처리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한 서비스로,

- 민원인은 통상 3~4회 정도 기관을 방문하여 혜택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 발급, 요금감면신청 등의 민원을 집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결과도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다.

□ 지난해 정부민원포털은 시각 장애인이 소리듣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사이트에 접근하기 쉽도록 사이트를 표준화하는 등 안전하면서도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금년 1월에“웹접근성 품질마크”도 부여받았으며,

-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서비스의 편리성·안전성 등을 측정하는 ‘웹 수준’ 평가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아 세계 1위를 하는데 정부민원포털이 큰 역할을 하였다.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는 여러기관 다수의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 특성상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 보안강화를 위해,
 - 민원인의 신청한 모든 송·수신 자료를 암호화 하였고, 자료열람 할 때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화면캡처방지 솔루션을 도입하였으며,
 -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2D·소형바코드, 복사방지마크, 진본성확인 타임스탬프를 도입하였고, 발급된 전자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확인시스템도 구축하였다.
- 앞으로 출생에서 사망까지 한국인의 주요 생애주기에 따른 일상생활 민원 중에서 서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민원을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10종을 추가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 특히, 재외국민·외국인·다문화가정 등 상대적으로 정부민원포털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온라인 민원발굴과 더불어 일괄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 개발하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7 원 클릭으로 나만의 주민서비스 OK!

- 행안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서비스 본격 개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 제공하던 주민생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단일창구,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life.go.kr)」 2단계 2차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1월 15일(금)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2차 구축 사업 완료보고 및 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구축사업으로 주민들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 제공하는 주민생활 서비스를 인터넷 포털을 통해 개별 기관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에서 결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을 통하여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대가족·3가족 이상 전기료감면, 가사간병바우처, 노후설계상담교육·신청 등 10종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개발하였고, 복지·보육에서 문화·체육 영역까지 확대하여 지리정보기반(GIS)에서 5만 5천여개 민간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민간시설 등 지역자원 35만종 서비스 중에서 약 4만종은 인터넷 신청에서 결과까지 손쉽게 완결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금년 3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격자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일괄신청에서 결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인 대가족과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료 감면신청 서비스도 편리하게 제공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으로 이동전화료(8월), 전기료(9월), TV수신료(10월) 등 공공요금감면 일괄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사례로 2009년도 대국민 제도 개선 분야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TV, 전기요금 등의 감면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편리함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행안부는 이번에 구축된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21일까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이벤트를 진행한다. ‘나만의 OK’를 사진으로 표현한 사연을 인터넷(oklife.go.kr)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노트

북, 디지털카메라 등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기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공공요금감면서비스, 구직서비스, 근로자생활안정지원서비스, 보육시설예약서비스 등과 함께 이번에 구축한 주민생활 서비스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용활성화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서비스 포털을 주민생활 지원하는 대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⑧ 희망근로 「내고장 역사찾기」 2월부터 전국시행 - 역대 단체장, 새마을운동, 지역행사 등 역사기록 집중발굴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일환으로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다가오는 2월부터 전국의 모든 시·도, 시·군·구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은 지난해 희망근로 시범사업으로 72개 지자체에서 시행해 매우 좋은 반응과 성과를 올렸다.
 - 제주도의 경우, 개인사가나 문중에서 조선시대의 재산상속기록인 분재기, 장례기록 등을 비롯하여 광복이후 제주감귤농장 개발 및 일본수출 등에 관한 역사기록 약 959점을 발굴·수집하였다.
 - 충남 논산시의 경우, 개인사가에 있던 1970년대 새마을운동, 논산 도시계획 기록물, 4H기록물, 훈포상 기록물 등 1,521점의 다양한 기록물을 발굴·수집하였다.
 - 경북 상주시는 순찰시계, 상주 역대 군수·시장·읍면동장 사진, 옛날 상주역광장과자전거선수 사진, 우편배달부자전거 등 행정박물과 시청각류 13,259점을 발굴·수집하였다. 작년도에 72개 지자체에서 1일 309명의 희

망근로가 참여하여 약 7만건의 역사기록을 발굴수집하였다.

- 올해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6개 광역시도, 230개 기초단체로 확대 시행한다. 지자체별로 희망근로 5~6명 외에 행정인턴 2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며, 연인원 약 36만 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 발굴수집 대상기록물은 지자체별 역대 단체장 및 유명인물 기록, '60~70년대에 전개된 4H활동, 새마을운동, 공원이나 건축물 등의 설치연혁 등 모든 역사기록을 망라할 계획이다. 발굴된 기록물은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열람 서비스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월 28일 오전 10시에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서울, 경기, 강원, 제주권의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1월 29일에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 호남, 영남권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역사학, 민속학 등 학계와 지방소재 각 대학교의 향토문화 연구기관 등에서는 이 사업이 지방에 흩어져 있는 기록물을 전반적으로 수집하여 멸실을 방지하고, 각종 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⑨ 120만 재외국민 국내 웹사이트 이용 가능해진다

－ 행안부, 재외국민 대상 공공 I-PIN 서비스 제공 －

-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윤○○씨는 지난 추석 때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친지들에게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선물하려다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 작년 3월에 뉴저지에서 영주권을 받게 된 윤씨는 현지 대사관에서 현지 이주자 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주민등록

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해야 물건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올해 설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I-PIN을 발급받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여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을 발급받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외국국적 취득 시 재외국민 지위 상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에게 주민정보 대신 여권정보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공공 I-PIN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외국민은 공공I-PIN센터(www.g-pin.go.kr)에 접속하여 성명과 여권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을 하면 I-PIN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I-PIN으로는 외교통상부,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3천여개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물론 포털·인터넷쇼핑·게임 서비스와 같은 400여개의 민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재외국민 I-PIN발급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이 주어진 재외국민이 국내 웹사이트에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도 가능하게 되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거주 외국인('09.12말 현재, 87만여명)을 위한 공공 I-PIN 서비스도 외국인등록정보를 활용하여 '09년 2월부터 제공해 오고 있다.

-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 홈페이지가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회원가입과 게시판 글쓰기 등 인터넷 이용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어 왔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 I-PIN 서비스'를 사용하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

출도 방지되면서, 국내거주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등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I-PIN 이란? >

(개 념)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상 개인 식별번호

※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

(이용 방법) 공공 I-PIN 센터 등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하고, I-PIN 서비스를 위한 ID와 Password를 부여 받아 이용

※ 본인확인방법 : (온라인)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세대정보, 여권정보
(오프라인) 읍면동 방문

10 행안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상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 천명

- 5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역대 선거 사상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을 목표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 그 첫 단계로 2월 1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와 각오를 천명하였다.
-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인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선출인원이 총 3,991명, 중앙선관위 예상 후보자수가 1만 5천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 정당·후보자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불법단속수요 등 선거관리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전·현직 공무원의 다수 출마가 예상되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도 우려되고 있다.

※ 광역단체장·광역의원·비례대표/기초단체장·기초의원·비례대표/교육감·교육의원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연초부터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공명선거를 강력히 추진하여 이번 선거가 선거사상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공명선거 추진계획(별첨)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 공명선거 5대 중점 추진계획의 그 주요 내용은

- 먼저, 중앙선관위, 검·경찰,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둘째, 공직기강 추진지침 시달 및 교육과 병행하여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선거가 끝날때까지 「특별감찰단」을 편성(총 50개반 150명)하고, 자체 감찰이 어려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교차 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며
- 셋째, 전국 261개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여 선거치안을 확립하고
- 넷째, 범사회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공명선거 캠페인 실시, 각종 홍보물 배포 등 전통적인 홍보 방식은 물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는 새로운 홍보 방식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 마지막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 앞으로 개표가 완료되는 마지막까지 치밀하고 빈틈없는 공정한 선거관리

로 이번 선거가 선진 공명선거 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되고,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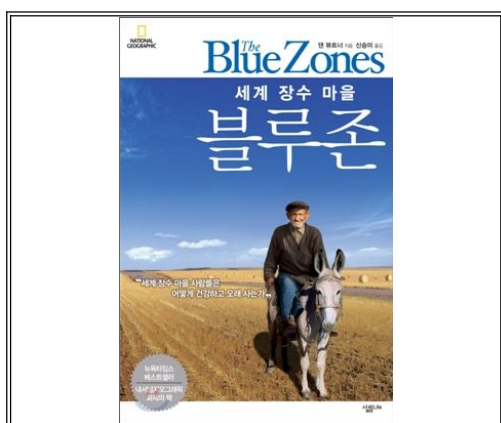
- 선거주무부처로서 앞장서서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 아울러, 공명선거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공명선거 실천의지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www.mogaha.go.kr/>]

【참고 1】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블루존
저자명 : 댄 뷰트너
출판사 : 살림Life
출판년 : 2009년
페이지 : 296
가 격 : 12,000원

세계 장수 마을 블루존. 이곳들은 전 세계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장수 인구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확연히 높은 지역이다.

블루존(Blue Zones)이라는 말은 이탈리아 의학 통계학자인 잔니 페스(Gianni Pes) 박사에 의해 고안된 말로, 최대 장수 지수(Extreme Longevity Index, ELI)가 높은 지역에 파란색 잉크로 지도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걸쳐 있는 블루존의 주민들은 80대, 90대, 100대까지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유전인가 때문일까? 식생활이 원인일까? 그렇지 않다면 그저 우연? 아니면 그곳 주민들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곳과 근본적으로 다를까?

이 책은 이처럼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는 블루존에 사는 장수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살아온 이 노인들을 통해 장수를 하면서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부터 더 길고 나은 삶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방법까지 각종 장수의 비밀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식습관, 이웃과 교류하는 방식,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식,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 질병을 막는 방식 등 베일에 감춰졌던 블루존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담으려 노력했다.

오지 탐험가이자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주요 장수 연재물을 게재하는 저자는 장수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미국 국립 노화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의 인구 통계학자와 과학자로 팀을 구성했다. 그들이 찾으려는 지역은 100세에 도달한 사람들의 비율이 아주 높고 평균적으로 타 지역보다 더 오래,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사는 곳이다. 그곳의 노인들의 생활양식 중에 인상적이었던 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추려내려고 노력했고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이 책은 우선 노화라는 현실을 다룬다.

인간이 100세까지 살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되고, 영양제나 호르몬 요법 그리고 유전자 조작이 장수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지, 또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을 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다.

이어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세계적으로 공인된 장수 지역인 블루존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바로 이탈리아 사르데냐(Sardegna) 섬의 바르바지아(Barbagia) 지역, 일본의 오키나와, 캘리포니아 주의 로마 린다(Loma Linda) 공동체,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Nicoya Peninsula)이다. 각 지역의 여행을 통해서 장수와 관련된 저마다의 독특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유명한 장수 노인들과 이들의 생활양식 및 문화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등장해 각기 지역의 역사, 유전자, 전통, 식습관 등 그들의 생활양식이 어떤 식으로 장수에 상호 작용을 하는지 보여준다. 생활양식에서 주요한 요소를 밝혀내고 이런 점이 건강하게 오랜 수명을 유지해 주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문화를 비교한 뒤에 세계적으로 최장수 노인들의 생활양식을 추려 아홉 가지 교훈으로 집약시켰다. 이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정보, 즉 실제적인 장수 공식이다.

물론 독자들은 장수에 필요한 방법을 모두 다 따라 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은 최고 요점만 골라서 보여줄 뿐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참고로 가장 마음에 드는 방식을 정해서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 책이 조언하는 방법에 따라 일상적인 습관으로 전환하면 된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독자들이 몇 달 혹은 몇 년을 더 살게 해준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된다.

생활양식만 바꾸면 10년 더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다!

세계의 블루존에는 수백 년, 혹은 수 천 년 간 쌓여온 인간의 경험이 깊게 새겨져 있다. 이 지역 주민의 식습관, 주변 사람과 교류하는 방식,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식,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 질병을 막는 방식, 세계관이 이들의 삶을 연장해주고 있다. 저자는 이 점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들의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장수할 수 있는 지혜를 발전시켜왔다. 자연에서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종(種)이 살아남는 것처럼 블루존의 문화는 구성원들의 장수에 가장 도움이 되는 좋은 습성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전수해왔다. 장수 노인들에게 배우려면, 그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

【참고 2】

2009년도 광역시·도 제정 조례 현황

연번	제 명	발의자	제정일
합계	472건		
소계	30건		
1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황화성 의원외 18명	2009-03-27
2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김동일,고남종의원외16명	2009-02-06
3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도지사	2009-02-06
4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도지사	2009-02-06
5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위원장	2009-02-06
6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유환준의원외19명	2009-03-27
7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강철민의의원외12명	2009-03-27
8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이종현,이정우의원외12명	2009-03-27
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김기영의원외16명	2009-03-27
10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이선자의의원외17명	2009-04-22
11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최의환의원외11명	2009-04-22
12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인석,백낙구의의원외23명	2009-05-18
13	충청남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황우성,유우환의원외18명	2009-07-07
14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성중의원외25명	2009-07-07
15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오배근,김동일의의원외11명	2009-07-07
16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차연의원외4명	2009-09-15
17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최의환,황우성 의원외1명	2009-09-15
18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정우,전인석의원외4명	2009-09-15
19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김문규,홍상현의원3명	2009-09-15
20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황화성의의원외6명	2009-10-15
21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고남종,전인석의원외5명	2009-10-15
22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박종근의원외10명	2009-10-15
23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오세욱의원외1명	2009-10-15
24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차성남,홍상현의원외4명	2009-10-15
25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이정우의원외 2명	2009-10-15
26	충청남도 경관 조례	김석곤,유병기 의원외6명	2009-12-21
27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유우환의원외6명	2009-12-21
28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박문규,이선자의의원외8명	2009-12-21
29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도지사	2009-12-21
30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백낙구의의원외10명	2009-12-21
소계	27건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부두환의원외9명	2009-02-25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시장	2009-02-25
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2-25

4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5-07
5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5-07
6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규영의원외10명	2009-05-07
7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김영천의원외11명	2009-05-07
8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5-07
9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재홍의원외11명	2009-05-07
10	서울특별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강감찬의원외19명	2009-05-07
11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하지원의의원외11명	2009-05-07
12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5-07
13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7-10
14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7-10
15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시장	2009-07-10
16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최병조의의원외25명	2009-07-10
17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박찬구의의원외13명	2009-09-08
18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원태의원외14명	2009-09-08
19	서울특별시 도심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2009-09-08
20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장	2009-10-20
21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감	2009-10-20
22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부두완의원외17명	2009-12-18
23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장	2009-12-18
24	서울특별시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시장	2009-12-18
25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장	2009-12-18
26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광식의의원외14명	2009-12-18
27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덕배의원외15명	2009-12-18
소계	27건		
1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시장	2009-01-19
2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장	2009-01-21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권영대의의원외10명	2009-03-17
4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장	2009-03-24
5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이산하의원외9명	2009-04-17
6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4-17
7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성성경의원외25명	2009-06-30
8	부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송숙희의원외11명	2009-06-30
9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김신락의원외10명	2009-06-30
10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6-30
11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이성두의원외11명	2009-07-24
12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시장	2009-07-24
13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장	2009-07-24
14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시장	2009-07-24
15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시장	2009-07-24

16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7-24
17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용원의원외17명	2009-09-04
18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봉민의원외17명	2009-09-04
19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박홍주의원외10명	2009-09-04
20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시장	2009-09-04
21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김영수의원외11명	2009-10-15
22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시장	2009-10-15
23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권영대의원외13명	2009-12-22
24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김영욱의원외15명	2009-12-22
25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신상해의원외11명	2009-12-22
26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손상용의원외11명	2009-12-22
27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장	2009-12-22
소계	31건		
1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도재준의원외1명	2009-02-24
2	대구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영식의원	2009-02-24
3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	김덕란의원외1명	2009-02-24
4	대구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권기일의원	2009-02-24
5	대구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권기일의원	2009-03-27
6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김영식외1명	2009-03-27
7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류병노의원외1명	2009-03-27
8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장	2009-04-24
9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박부희의원	2009-04-24
10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재술의원	2009-04-24
11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김의식의원	2009-04-24
12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기일의원외6명	2009-05-21
13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재술의원	2009-05-21
14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권기일외1명	2009-05-27
15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이동희의원	2009-06-30
16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6-30
17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이재술의원	2009-06-30
18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도이환의원	2009-07-24
19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이재술의원	2009-07-24
20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지용성의원외1명	2009-09-25
21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김영식외2명	2009-09-25
22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도이환의원	2009-09-25
23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이재술의원	2009-09-25
24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정순천의원	2009-09-25
25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윤원외1명	2009-09-25
26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이재술의원	2009-09-25
27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지용성의원외1명	2009-10-23

28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종기외1명	2009-10-23
29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정해용의원	2009-10-23
30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류규하의원외1명	2009-10-23
31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류병노의원외3명	2009-12-07
소계	26건		
1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유천호의원외9명	2009-02-06
2	인천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2-06
3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유천호의원외9명	2009-03-17
4	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근학외10명	2009-04-14
5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명숙외7명	2009-05-18
6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최병덕외20명	2009-05-18
7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명숙외10명	2009-07-10
8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박승희외13명	2009-07-10
9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시장	2009-09-21
10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장	2009-09-21
11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윤지상외9명	2009-09-21
12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윤지상외9명	2009-09-21
13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박창규외8명	2009-09-21
14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박창규외16명	2009-09-21
15	인천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9-21
16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한도섭의원외11명	2009-10-19
17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장	2009-10-19
18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김성숙의원외6명	2009-10-19
19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김용근의원외16명	2009-10-19
20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이은석외6명	2009-10-19
21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정종섭의원외7명	2009-12-24
22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김소림의원외19명	2009-12-24
23	인천광역시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유천호의원외9명	2009-12-24
24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이명숙외18명	2009-12-24
25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박승희외26명	2009-12-24
26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이명숙의원외7명	2009-12-24
소계	39건		
1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	전선기의원	2009-02-12
2	광주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김선문의원	2009-02-12
3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김후진의원	2009-02-12
4	광주광역시 우수시공 아파트포상 조례	양혜령의원	2009-02-12
5	광주광역시 정부조사업 개정에 따른 광주 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2-12
6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2-12
7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운영 조례	시장	2009-02-12
8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성숙, 김월출의원	2009-03-31

9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후진의원	2009-03-31
10	광주광역시 빗고을 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장	2009-03-31
11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 .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3-31
12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송재선의원외1명	2009-04-23
13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김후진의원	2009-04-23
14	광주광역시 여성인적자원개발 조례	시장	2009-04-23
15	광주광역시 대기환경 보전 조례	시장	2009-04-23
16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진선기의원	2009-06-22
17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	손재홍의원	2009-06-22
18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김후진의원	2009-06-22
19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김동식	2009-06-22
20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정비 조례	시장	2009-06-22
21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장	2009-06-22
22	광주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양혜령의원	2009-07-13
23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진선기의원	2009-07-13
24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이정남의원외3명	2009-07-27
25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종천의원	2009-07-27
26	광주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박원의원	2009-09-07
27	광주광역시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박원의원	2009-09-07
28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유재신의원	2009-09-07
29	광주광역시 건축디자인 진흥 조례	김후진의원	2009-09-07
30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김성숙의원	2009-10-27
31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강박원의원외1명	2009-10-27
32	광주광역시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광항의원	2009-10-27
33	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강박원의원	2009-10-27
34	광주광역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김후진의원	2009-10-27
35	광주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	강박원의원	2009-12-23
36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진선기의원	2009-12-23
37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	나종천의원	2009-12-23
38	광주광역시 경로당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김후진의원	2009-12-23
39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양혜령의원	2009-12-23
소계	30건		
1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 구성.운영조례	시장	2009-02-11
2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김인식의원외7명	2009-02-11
3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박희진의원외9명	2009-02-11
4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시장	2009-03-24
5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김인식의원외5명	2009-03-24
6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장	2009-05-22
7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장	2009-05-22
8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장	2009-05-22

9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장	2009-05-22
10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형례의원외6명	2009-05-22
11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승근의원외7명	2009-05-22
12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병배의원외6명	2009-05-22
13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권형례의원외6명	2009-05-22
14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김재경의원외6명	2009-05-22
15	대전광역시 출자 , 출연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양승근의원외7명	2009-06-30
16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시장	2009-06-30
17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송재용의원외9명	2009-06-30
18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장	2009-07-13
19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조신행의원외9명	2009-07-13
20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박수범의원외7명	2009-09-18
21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오정섭외5명	2009-09-18
22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곽영교의원외5명	2009-09-18
23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조신행의원외7명	2009-09-18
24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시장	2009-12-22
25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및 지원 조례	조신행의원외6명	2009-12-22
26	대전광역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장	2009-12-22
27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 사업장 조례	시장	2009-12-22
28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장	2009-12-22
29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및 지원 조례	김재경의원외9명	2009-12-22
30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오영세의의원외5명	2009-12-22
소계	13건		
1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현숙의원외7명	2009-03-18
2	울산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	송미경의원외6명	2009-04-17
3	울산광역시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허령의원외5명	2009-04-17
4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김기환의원외5명	2009-05-26
5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김재열의원외5명	2009-06-24
6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천명수의의원외6명	2009-07-17
7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서동욱의원외5명	2009-09-24
8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윤종오의원외7명	2009-09-24
9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장	2009-09-24
10	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	교육감	2009-10-21
11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시장	2009-12-22
12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족련의원외9명	2009-12-22
13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은주의의원외5명	2009-12-22
소계	14건		
1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지사	2009-04-03
2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강석오의원외44명	2009-04-03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김경호의원외13명	2009-04-03

4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김학진의원외14명	2009-04-24
5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고영인의원외32명	2009-05-29
6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권혁산의원외26명	2009-07-22
7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김인중의원외29명	2009-09-15
8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강석오의원외47명	2009-09-15
9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김기선의원외27명	2009-09-15
10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김의현의원외11명	2009-10-19
11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김보연의원외35명	2009-10-19
1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권혁산의원외71명	2009-10-19
13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강석오의원외43명	2009-11-26
14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경기도지사	2009-12-21
소계	23건		
1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도지사	2009-02-24
2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도지사	2009-02-24
3	강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조례	도지사	2009-03-20
4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2009-03-20
5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의원	2009-04-23
6	강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2009-04-23
7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의원	2009-04-23
8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2009-04-23
9	강원도 생활체육진흥조례	의원	2009-05-20
10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	2009-05-20
11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의원	2009-05-20
12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 조례	의원	2009-05-20
13	강원도 재해영향평가 폐지조례	도지사	2009-05-20
14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	의원	2009-06-19
15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의원	2009-06-19
16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도지사	2009-07-20
17	강원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7-20
18	강원도평생교육진흥조례	도지사	2009-09-11
19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 운영조례	도지사	2009-09-11
20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2009-09-11
21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조례	의원	2009-09-11
22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의원	2009-10-16
23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의원	2009-10-16
소계	25건		
1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김환동 의원외 6명	2009-3-37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장주식 의원외 6명	2009-3-37
3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한창동 의원 외 7명	2009-3-37
4	충청북도 경관 조례	도지사	2009-3-37

5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도지사	2009-3-37
6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심흥섭 의원 외 6명	2009-3-37
7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송은섭의원외6명	2009-3-37
8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민경환의원외6명	2009-3-37
9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권광택 의원 외 6명	2009-3-37
10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박영웅 의원 외 6명	2009-3-37
11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강태원의원외 6명	2009-04-22
12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최재옥의원외 7명	2009-04-22
13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정윤숙의원외 8명	2009-04-22
14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권광택의원 외 6명	2009-05-15
1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박영웅 의원외 6명	2009-05-15
16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6-19
17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권광택의원외 6명	2009-07-23
18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 조례	송은섭의원 외 24명	2009-07-23
19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도지사	2009-07-23
20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심흥섭의원외 6명	2009-09-21
21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최미애의원외 8명	2009-09-21
22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9-21
23	충청북도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도지사	2009-12-15
24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송은섭 의원외 22명	2009-12-24
25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	도지사	2009-12-24
소계	20건		
1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학수의원외21명	2009-01-16
2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김연근의원외 22명	2009-02-19
3	전라북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2-19
4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김연근의원외 10명	2009-03-24
5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이상현의원외 22명	2009-03-24
6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권창환의원외 17명	2009-03-24
7	전라북도 경관조례	도지사	2009-03-24
8	전라북도 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최형열의원외 24명	2009-04-09
9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배승철의원외 20명	2009-04-09
10	전라북도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유유순의원외 20명	2009-04-09
11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이영조의원외 16명	2009-05-18
12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	김성주의원외 20명	2009-06-15
13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동길의원외 12명	2009-06-15
14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배승철의원외 22명	2009-07-22
15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이상현의원외 22명	2009-09-16
16	전라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최형열의원외 14명	2009-10-16
17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0-16
18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김호서의원외 23명	2009-12-15

19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유창희의원외 20명	2009-12-15
20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김병윤의원외 20명	2009-12-15
소계	14건		
1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도지사	2009-01-21
2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김병욱의원외10명	2009-04-06
3	전라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운영 조례	도지사	2009-04-06
4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고송자의원외 22명	2009-05-04
5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	도지사	2009-05-04
6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박흥수의원외18명	2009-06-19
7	전라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송범근의원외10명	2009-07-15
8	전라남도빗물이용에관한조례	이기병의원외10명	2009-09-14
9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 조례	박찬수의원외10명	2009-09-14
10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정창욱의원외10명	2009-10-23
11	재단법인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도지사	2009-10-23
12	전라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국령애의원외29명	2009-12-23
13	전라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종헌의원외10명	2009-12-23
14	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양승일의원외11명	2009-12-23
소계	22건		
1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2-20
2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2-20
3	경상북도 안용복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09-02-20
4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도지사	2009-02-20
5	경상북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도지사	2009-02-20
6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도지사	2009-02-20
7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이재철의원외8명	2009-02-20
8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조례	도지사	2009-04-07
9	경상북도 포항영일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도지사	2009-04-07
10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위원장	2009-04-07
11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도지사	2009-05-21
12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위원장	2009-05-21
13	경상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도지사	2009-07-03
14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윤창욱의원외12명	2009-07-03
15	경상북도 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장	2009-09-08
16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최윤희의원외10명	2009-09-08
17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0-19
18	경상북도 경관 조례	도지사	2009-10-19
19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장	2009-10-19
20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지사	2009-12-16
21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한혜련의원외26명	2009-12-23
22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김대원의원외16명	2009-12-23

소계	50건		
1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황태수의원	2009-01-22
2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황태수의원	2009-01-22
3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	도지사	2009-01-22
4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명희진의원외1명	2009-03-09
5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박판도의원	2009-03-09
6	경상남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도지사	2009-03-09
7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	김해연의원외1명	2009-03-09
8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윤용근의원외10명	2009-03-09
9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해연의원외2명	2009-03-09
10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4-28
11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신용욱의원외6명	2009-04-28
12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조근제의원외1명	2009-04-28
13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김상하의원	2009-04-28
14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이유갑의원	2009-04-28
15	경상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송경영의원외1명	2009-04-28
16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김해연의원외2명	2009-05-26
17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박상제의원	2009-05-26
18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5-26
19	경상남도 의로운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박동식의원외3명	2009-05-26
20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성계관의원외1명	2009-05-26
21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김주일의원외1명	2009-06-18
22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도지사	2009-06-18
23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박영일의원외1명	2009-06-18
24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조례	윤용근의원외10명	2009-06-18
25	경상남도 저축장려조례	김오명의원외1명	2009-06-18
26	경상남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허좌영의원외2명	2009-07-24
2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7-24
28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문준희의원1명	2009-07-24
29	경상남도 가족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근제의원외1명	2009-07-24
30	경상남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허좌영의원외2명	2009-07-24
3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김해연의원외1명	2009-07-24
32	경상남도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이병희의원외2명	2009-07-24
33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	정판용의원외2명	2009-07-24
34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도지사	2009-09-24
35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이은지의원외2명	2009-09-24
36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황태수의원외1명	2009-09-24
37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백승원의원외3명	2009-09-24
38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9-24
39	경상남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기태의원외2명	2009-09-24

40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김상하의원외2명	2009-09-24
41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임경숙의원외4명	2009-09-24
42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도난실의원외1명	2009-10-21
43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신용욱의원10명	2009-10-21
44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김오영의원	2009-10-21
45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허좌영의원외2명	2009-10-21
46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도지사	2009-12-14
47	경상남도 한옥지원조례	공영윤의원외2명	2009-12-14
48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박영일의원	2009-12-14
49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김오영의원	2009-12-14
50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도난실의원외1명	2009-12-24
소계	80건		
1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도지사	2009-02-12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도지사	2009-02-25
3	제주특별자치도 누리공원 관리 및 운용 조례	도지사	2009-02-25
4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2-25
5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하민철의원	2009-03-24
6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도지사	2009-03-31
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도지사	2009-03-31
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양승문의원외1명	2009-03-31
9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우범의원외9명	2009-04-20
10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4-20
11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도지사	2009-04-20
12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4-20
1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오정훈의원	2009-05-19
14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	강창식의원외3명	2009-05-19
15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김미자의원외8명	2009-05-19
16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방문추의원외5명	2009-05-19
1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5-19
18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	도지사	2009-05-19
19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5-19
20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도지사	2009-06-19
2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6-19
2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도지사	2009-06-19
2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도지사	2009-06-19
24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6-19
25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도지사	2009-06-19
26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6-19
27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도지사	2009-07-21
28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7-21

29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7-21
30	제주특별자치도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 조례	강남진의원외8명	2009-07-21
3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	좌남수의원	2009-07-21
32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임문범의원외9명	2009-09-22
3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도지사	2009-09-22
34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9-22
3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도지사	2009-09-22
3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도지사	2009-09-22
37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김완근의원	2009-09-22
38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9-22
39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09-22
40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행정자치위원장	2009-09-22
41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0-10
42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	도지사	2009-10-19
4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0-19
44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영훈의원	2009-10-19
4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오옥만의원	2009-10-19
4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0-19
47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0-19
4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	오영훈의원	2009-10-19
49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도지사	2009-10-19
50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도지사	2009-10-19
5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 조례	도지사	2009-10-19
5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09-10-19
53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0-19
54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	위성근의원	2009-10-19
5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안동우의원	2009-10-19
5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도지사	2009-10-19
57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환경도시위원장	2009-10-19
5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1-10
59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도지사	2009-11-10
60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1-10
61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도지사	2009-11-10
6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09-11-10
63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09-11-10
64	제주특별자치도 김정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09-11-10
6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1-10
66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	도지사	2009-11-27
67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조성 조례	강문철의원	2009-12-15
68	제주문화예술훈예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도지사	2009-12-15

69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동우의원	2009-12-24
70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2-24
71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도지사	2009-12-24
72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2-24
73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09-12-24
74	제주특별자치도 출연.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장동훈의원	2009-12-24
75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09-12-24
76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2-24
77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09-12-24
78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09-12-24
7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김순효의원	2009-12-24
80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09-12-24